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허가번호 제 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<input type="checkbox"/> 포획 <input type="checkbox"/> 채취 <input type="checkbox"/> 방사 <input type="checkbox"/> 이식 <input type="checkbox"/> 가공 <input type="checkbox"/> 유통 <input type="checkbox"/> 보관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출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 <input type="checkbox"/> 반출 허가증 <input type="checkbox"/> 반입 <input type="checkbox"/> 훼손 <input type="checkbox"/> 고사			
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	
상 호(명 칭)		전 화	
주 소			
허가 사항	대상지역		
	대상종명		
	수 량	허가기간	
	목적·용도		
	허가조건		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<input type="checkbox"/> 포획 <input type="checkbox"/> 채취 <input type="checkbox"/> 방사 <input type="checkbox"/> 이식 <input type="checkbox"/> 가공 <input type="checkbox"/> 유통 <input type="checkbox"/> 보관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출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 <input type="checkbox"/> 반출 <input type="checkbox"/> 반입 <input type="checkbox"/> 훼손 <input type="checkbox"/> 고사를 허가합니다.			
년 월 일			
유역 환경 청장 (지방환경청장)		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red; width: 80px; height: 80px; 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 justify-content: center; margin: 0 auto;"> 직인 </div>	
유의사항 1.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·채취등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. 2. 포획·채취등을 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5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 3. 화약류·덧·울무·그물·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·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방법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하지 못합니다. 4. 허가증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.			

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·채취 등 신고명세

일시	멸종위기종	개체수	포획·채취 장소	포획·채취 방법	담당자 확인